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 월 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정보보호 공시 내용 검증 방법 및 절차, 사전점검기관 등록 및 관리, 정보보호 공시 내용 공시취소, 정보보호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공시 내용 검증 방법 및 절차(안 제3조의2, 신설)

- 법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정보보호 공시 내용 검증 대상 및 면제, 검증 방법, 검증 절차, 수정 요청, 전담기관 지정·운영 등을 규정함

나. 사전점검기관 등록 및 관리(안 제3조의3, 신설)

- 정보보호공시자는 사전점검기관으로부터 공시 내용에 대한 사전 점검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기업에게 공시 내용 검증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사전점검기관의 등록 요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정보보호 공시 내용 취소(안 제3조의4, 신설)

- 공시 내용 검증 절차 중 하나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등 공시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정보보호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안 제3조의5, 신설)

- 정보보호공시의무자 해당여부, 공시 내용 검증 및 절차 등 공시 제도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하여 의견을 제공하는 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7. 00. ~ 8. 00.) 예정

3) 행정규제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2(공시 내용 검증 방법 및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한 자(이하 “정보보호공시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검증을 연 1회 이상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의3에 따른 범인으로부터 정보보호 공시 내용(이하 “공시 내용”이라 한다)에 대한 사전점검(이하 “공시사전점검”이라 한다)을 받고 사전점검기관이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한 정보보호공시자는 검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시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공시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4에 따른 공시 내용 검증 결과 중요사항에 대한 누락이 있거나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정보보호공시자에 대하여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공시 내용 검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2. 정보보호 공시 전문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3. 공시점검단 구성 및 운영
4. 사전점검기관 등록 및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와 관련된 업무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운영 및 전담기관의 업무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3(사전점검기관) ① 제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공시사전점검을 수행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사전점검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점검기관으로 등록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2. 회계 자료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갖추 것(「공인회계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은 제외한다)

3. 데이터의 유출 방지, 파기 및 기록·보관 등 보안 및 관리 방안을 갖출 것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전점검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및 인력 유지 여부 등을 관리·평가하고,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사전점검기관은 제4항에 따른 관리·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보보호 공시 사전점검 실적보고서

2. 공시 사전점검기관의 등록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전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

2. 사전점검기관 스스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공시사전점검 내용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사전점검기관 등록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4(공시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시를 취소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경우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수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공시 내용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 및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취소한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할인금액 반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의5(심의위원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공시의무자 해당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공시 내용 수정 요청에 관한 사항
3. 공시취소에 관한 사항
4. 사전점검기관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시 내용 검증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정보보호, 정보기술, 회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공시 내용 검증 방법 및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한 자(이하 “정보보호공시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검증을 연 1회 이상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의3에 따른 법인으로부터 정보보호 공시 내용(이하 “공시 내용”이라 한다)에 대한 사전점검(이하 “공시사전점검”이라 한다)을 받고 사전점검기관이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한 정보보호공시자는 검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u> <u>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시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 <u>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공시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u>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4에 따른 공시 내용 검증 결과 중요사항에 대한 누락이 있거나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정보보호공시자에 대하여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공시 내용 검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2. 정보보호 공시 전문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3. 공시점검단 구성 및 운영
4. 사전점검기관 등록 및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와 관련된 업무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운영 및 전담기관의

<신 설>

업무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3(사전점검기관) ① 제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공시사전점검을 수행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사전점검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점검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2. 회계 자료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갖추는 것(「공인회계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의 경우 제외한다)

3. 공시 내용 검증과 관련된 자료 일체의 유출 방지, 파기 및 기록·보관 등 보안 및 관리 방안을 갖추는 것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

른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등록 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전점검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및 인력 유지 여부 등을 관리·평가하고,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사전점검기관은 제4항에 따른 관리·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보보호 공시 사전점검 실적보고서

2. 공시 사전점검기관의 등록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전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

<신 설>

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

2. 사전점검기관 스스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
우

3. 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을 충
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공시사전점검 내용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
률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
우

⑦ 제1항에 따른 사전점검기관
등록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4(공시취소) 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시를 취소
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
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경
우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수정

<신 설>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공시 내용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 및 제1항에 따
라 정보보호 공시를 취소한 경
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수
료 할인금액 반납 등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의5(심의위원회) ①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8조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공시의
무자 해당여부에 대한 이의신
청에 관한 사항

2. 공시 내용 수정 요청에 관한
사항

3. 공시취소에 관한 사항

4. 사전점검기관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시 내용 검증에 필

요한 사항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정보보호, 정보기술, 회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다.